조문별 개정이유서

◇ 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 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 개정 이유

현행 고시에서는 경제안보품목등 확인 신청 대상을 기업이 “생산·공급·수출 등을 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공급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경제안보품목등 해당여부 확인이 곤란함.

이에 생산・공급・수출·수입을 하고 있는 제품뿐 아니라 생산·공급·수출·수입을 하려는 제품도 확인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계획 단계의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제안보품목등 확인 신청 대상 확대 및 신청 주체 정비(안 제5조제2항)

생산・공급・수출 등을 하고 있는 제품뿐 아니라 생산・공급・수출・수입 등을 하려는 있는 제품도 확인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신청 주체에 “기업”뿐만 아니라 단체 등도 포함되도록 정비함.

나. 계획 단계 신청자의 첨부서류 명시(안 별지 제4호서식 첨부서류란)

생산・공급・수출・수입 등을 하려는 경우 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첨부서류란에 제4호를 신설하고, 기존 제4호를 제5호로 변경함.